

# 예 산 총 칙

2011년도 추경 2 회

제 1 조 2011년도 세입·세출 예산총액 및 회계별로 일시 차입할 수 있는 최고액은 다음과 같다.

(단위:천원)

구 분	세입·세출예산총액	일시차입한도액
합 계	276,032,159	8,280,965
일반회계	227,393,860	6,821,816
특별회계	48,638,299	1,459,149
공기업특별회계	22,076,259	662,288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22,076,259	662,288
기타특별회계	26,562,040	796,861
수질개선 특별회계	9,925,712	297,771
주택사업 특별회계	12,155,298	364,659
의료보호기금운영 특별회계	900,855	27,026
자활기금 특별회계	1,339,411	40,182
농공단지조성 및 관리 특별회계	887,715	26,631
주차장관리 특별회계	931,190	27,936
도시계획시설대지보상 특별회계	369,631	11,089
기반시설 특별회계	30,359	911
발전소주변지역지원특별회계	21,869	656

제 2 조 세입·세출예산의 명세는 별첨 "세입·세출예산"과 같다.

제 3 조 채무부담행위사업은 별첨 "채무부담행위조서"와 같다.

제 4 조 계속비사업은 별첨 "계속비사업조서"와 같다.

제 5 조 일반회계 예비비는 3,027,968천원으로 한다.

제 6 조 지방재정법 제47조 제1항 단서규정에 의한 총액인건비에 포함된 경비와 채무상환원리금, 재해대책 및 복구비는 상호 이용할 수 있다.